

신용장과 청구보증서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for Letter of Credit and Demand Guarantee

박세운(Park, Sae Woon)

제1저자,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장우(Choi, Jang Woo)

교신저자,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실무적 시사점 |
| II. 비서류적 조건의 의의와 규정 비교 | V. 결론 |
| III. ICC 공식의견과 최근 판례 분석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을 저해하여, 은행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UCP500에서부터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단 ICC Position Paper No.3에 따라 신용장에 관련 서류가 요구되었다면 유효성이 인정되었다. UCP600도 UCP500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UCP600에는 ICC Position Paper No.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였다면 무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용장거래에 UCP600이 적용된다고 하여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는 비서류적 조건 중 서류조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즉 각국의 판례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결정될 수 있거나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ISP98과 URDG758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때 비서류적 조건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주제어 : 비서류적 조건,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 청구보증서

I. 서 론

국제상거래에서 무역대금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상업신용장과 입찰보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신용장과 청구보증서는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한다. 신용장과 청구보증서는 서류거래에 해당되어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의 서류 요구조건이 완전하고 정확하여야 하므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개설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¹⁾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에서 수익자가 제시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지 조건만을 명시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여부이다. 비서류적 조건이란 제시되어야 할 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조건만을 언급함으로써 은행이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서류가 아닌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조건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에서는 ICC라고 함)의 신용장통일규칙(UCP600),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²⁾ 및 청구보증서통일규칙(URDG758)³⁾에서는 이러한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 통일상법전(U.C.C.)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통일규칙에 따라 비서류적 조건의 범위가 약간 다르며, 특히 UCP600에서는 UCP500에 따라 발간된 ICC Position paper가 유효하지 않아 비서류적 조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례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이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신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해서 명확하고, 수익자가 그 비서류적 조건을 응낙하였다면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판례⁴⁾도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의 판례에 따라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인정 범위가 다르고, 전문가에 따라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인정 범위에 대한 의견도 다르다.

신용장거래의 비서류적 조건에 대하여는 남풍우·한상현(2003), 석광현(2004), 이대우(2007), 강원진·김동윤(2007)의 연구가 있으나 UCP600 개정 후 UCP500의 개정사항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고, 2008년 이후의 판례에 대한 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2010년에 개정된

1) ISBP Paragraph 2

2)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98

3)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758

4)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URDG758과의 비교 연구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장과 청구보증서에서의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각 통일규칙의 차이점과 UCP600에서의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ICC 은행위원회의 공식의견과 판례를 분석하여 실무상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국제상관습과 관련하여 UCP, ISP98 및 URDG758와 관련 서적 및 저널을 참조하였다. 사례연구로는 ICC 은행위원회의 공식의견, 외국 및 한국 법원의 최근 판례를 검토하였다.

II. 비서류적 조건의 의의와 규정 비교

1. 비서류적 조건의 의의

신용장에서 비서류적 조건이란 제시되어야 할 서류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조건만을 언급함으로써 은행이 서류가 아닌 사실문제에 대한 조사로 조건 이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이 신용장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⁵⁾ 그러나 ISP98과 URDG758에서는 은행 자신의 기록으로서 확인할 수 있거나 공표된 지수는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지 않아 비서류적 조건의 범위를 UCP600에 비하여는 좁게 정의하고 있다.

신용장에 비서류적 조건이 있으면 은행은 기초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신용장은 기초계약과 별개라는 독립성의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⁶⁾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은 그것이 서류거래라는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신용장은 서류의 제시에 의존하는 것으로 사건이나 사실 또는 서류가 표시하는 실제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화환(documentary)”이라는 단어가 U.C.C. 5-102(a)(10)의 신용장의 정의에 삽입되었다.⁷⁾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한다고 최초로 규정한 것은 UCP500이다.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초기 판례인 Banque de l'Indochine 대 JH Rayner(Mincing Lane) 사

5) Katherine A. Barski, "A Comparison of Article 5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d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Loyola Law Review, Vol.41, Loyola University, 1996, p.746.

6) Janis Penton Soshuk, "The Consequence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Brooklyn Law Review, Vol.56 No1, 1990, p.42.

7) a 'Letter of credit' means a definite undertaking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Section 5-104 by an issuer to a beneficiary at the request or for the account of an applicant or, in the case of a financial institution, to itself or for its own account, to honor a documentary presentation by payment or delivery of an item of value.

건⁸⁾에서 Parker J. 판사는 국제선박동맹 가입선사의 선박에 화물이 선적될 것을 요구한 신용장조건에 대하여 그것을 표시한 서류 제시 여부를 은행이 심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판결은 비서류적 조건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은행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고, 신용장 요구조건의 일치성을 추구하는 당사자에게 불확실성과 불공정성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⁹⁾ UCP 500 제13조 c항은 이와 같은 불확실성과 불공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야 할 서류를 명시하는 것은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의 책임이다. 이 때문에 UCP 500 제13조 c항(UCP600에서는 제14조 h항)의 규정을 매입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에게,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¹⁰⁾

UCP500 제13조 c항은 신용장거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이 조항이 없을 때에는 수익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신용장조건을 대금지급의 선행조건으로 하여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즉 개설은행에 대한 서류의 제시 없이 수익자의 행위를 요구하는 신용장조건도 어떤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였다. 기술한 Banque de l'Indochine 대 JH Rayner 사건에서는 신용장에서 화물이 동맹선사에 적재될 것을 요구하였다면 은행은 이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이 사건에 UCP500 또는 UCP600이 적용되었다면 판결은 달라졌을 것이다.¹¹⁾

ICC 은행위원회는 1994년 UCP500 제13조 c항에 대한 ICC Position Paper No.3을 발행하여 화환신용장의 성격과 기능을 침해하는 화환신용장에 비서류적 조건을 삽입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려고 하였다. ICC Position Paper No.3에서는 신용장에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와 명확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면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UCP500 제13조 c항은 생각만큼 비서류적 조건을 제거하지 못하였다.¹²⁾

이 규정의 적용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신용장에 비서류적 조건이 있더라도 그것은 효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UCP 규정은 신용장에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용장의 명백한 조건(express term)은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하도록 규정한 UCP의 규정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명백한 비서류적 조건이 UCP

8) (1983) QB 711.

9) Peter Ellinger and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Hart Publishing, 2010, p. 238.

10) Korea Exchange Bank v. Standard Chartered Bank (2006) 1 SRL 565,577.

11) Ellinger and Dora, op.cit. p.239와 Richard King, "Gutteridge & Megrah's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 Europa Publication Ltd., 2001, p. 193.

12) 이 조항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다음의 판결에서 실패하였다.

Credit Agricole Indosuez 대 Generale Bank and Seco Steel Trading Inc. and Considar Inc (2000) 1 Lloyd's Rep 123

Kumagai-Zenecon Construction Ltd I(in Iiq) v Arab Bank plc (1997) 2 SLR 805 aff'd on appeal (1997) 3 SRL 770; Korea Exchange Bank v Standard Chartered Bank (2006) 1SRL565.

조항보다 우선되어야 하느냐 이다. 그 대답은 신용장 작용에 매우 중요하거나 신용장의 명백한 조건과 UCP의 조항을 양립할 수 없게 하는 비서류적 조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UCP600에서도 UCP500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용장의 명백한 조건인 비서류적 조건을 통일규칙에 우선하여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UCP600 제1조에서는 UCP500의 신용장에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면(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과 유사한 표현으로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다면(unless expressly modified or excluded by the credit) 이 신용장통일규칙은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은 그것의 신용장의 작용에서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신용장과 청구보증서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중요할수록 법원은 UCP600 제14조 h항이 명백하게 수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비서류적 조건이 유효한 것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UCP600의 수정과 배제가 반드시 신용장에 그것에 대한 명백한 문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UCP600에서는 ICC Position Paper No.3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서류가 신용장의 다른 곳에서 요구되었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¹³⁾ 비서류적 조건이 신용장의 요구서류에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과 모순되어서는 안된다. 즉 UCP600 제14조 h항의 규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제14조 d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¹⁴⁾

2. 통일규칙 간 규정 비교

UCP600 제14조 h항에서는 신용장에서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면 비서류적 조건으로 본다. 그러나 ISP98의 제4.11조와 URDG758 제7조에서는 약간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ISP98에서는 두 가지 요건 즉 첫째,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고 둘째,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개설은행이 결정할 수 없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서류적 조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URDG758 제7조에는 일차나 기간 경과 이외에 해당 조건의 준수되었음을 표시하는 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보증인 자신의 기록이나 보증상 명시된 지표로부터 결정할 수 없을 경

13) ICC, "Commentary on UCP600", ICC, 2007, p.66.

14) The view of the Banking Commission is that sub-article 14 (h) is not absolute and is qualified by the content of sub-article 14 (d). (R.613/TA644 rev.)

우에 비서류적 조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⁵⁾ 예컨대, 보증신용장에서 조건 중의 하나로 “This standby will only be honoured if the applicant default.”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이 조건은 UCP600, ISP98 및 URDG758에서 모두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보증신용장 조건의 하나로 “This standby will only be honoured if the beneficiary issues a performance bond of US\$200,00 in favour of the applicant and such performance bond is advised through us”라고 명시되었다면 이 조건은 ISP98과 URDG758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해 조건의 충족 여부를 개설은행 자신의 통상적인 업무 내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ICC 공식의견과 최근 판례 분석

1. ICC 공식의견

UCP600 제14조 h항의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규정은 UCP500 제13조 c항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으나 UCP600에서는 UCP500에 따라 발간된 Position Paper No.3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적으로는 규정 내용이 개정되었다. 즉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였다더라도 서류적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UCP600이 적용되는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ICC 공식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운송과 관련된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공식의견(R631 / TA644rev)¹⁶⁾

15) URDG758의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규정은 신설규정이다. 이 규정을 신설한 것은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보증서는 청구보증인 아닌 부속보증인이 되기 때문이다.(Georges Affaki and Roy Goode, “Guide to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758”, ICC, 2011, p.118.)

16) Conclusion

From the text of the query, various credits are received that include details relating to shipment of the goods, such as details of transport from and to and the latest shipment date, but do not require the presentation of any document evidencing compliance therewith. The question that has been posed does not refer to the possible implications of handling such credits where shipment of goods is involved but there is no evidence required as to the completion of the respective carriage. These need to be considered by each issuing and nominated bank in accordance with its own internal policies and local regulatory requirements.

Where it has been agreed to handle such a transaction, details such as the places, ports or airports from which the goods are to be shipped from and to and the latest shipment date may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a complying presentation and need not be stated in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presented. However, the data in the other stipulated documents will still be subject to review under sub-article 14 (d) to ensure that any data is not conflicting with the data in the credit. According to sub-article 14 (h), banks will deem a non-documentary condition as not stated (on the basis that there is no necessity for the beneficiary to provide any evidence of compliance) and will disregard it. Should the beneficiary, nevertheless, elect to insert

신용장에 선적항과 하역항 및 선적기일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정보를 내포한 어떠한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UCP600 제14조 h항에 따라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신용장에 따라 제시되는 다른 서류에 이것이 기재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UCP600 제14조 d항에 따라 다른 제시서류에 이와 모순된 기재가 있다면 하자가 된다.

2) 포장, 원산지 및 하인 표시와 관련된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공식의견(TA689)

SWIFT로 통지된 신용장의 field 47A(additional condition)에 포장, 원산지 및 하인에 대한 기재 요구조건은 UCP600 제14조 h항에 따라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되어 무시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수익자가 신용장 요구서류에 이 비서류적 조건과 모순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되지 않는다. 신용장의 field 47A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Goods must be shipped in export standard packing and clearly marked country of origin and shipping marks in each and every package/carton/bag/container”

2. 최근 판례 분석

신용장 및 청구보증서의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판례에서는 신용장 및 청구보증서거래의 독립성의 원칙을 중요시 하느냐 아니면 사적 자치의 원칙을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신용장 및 청구보증서의 독립성의 원칙을 중요시 하면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중요시하면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된다.

1)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

(1) Sirius 사건¹⁷⁾

로이드의 신디케이트인 Agnew는 FAI General Insurance Co.에 재보험을 들었으나, 이 회사를 충분히 신뢰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재보험회사로서 Sirius International Insurance Corp가 궁극적인 재보험회사인 보험증권을 받았다. Sirius가 재보험금 지급을 로이드의 신디케이트로부터

such data on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then it must ensure that the data does not conflict with the data in the credit. The view of the Banking Commission is that sub-article 14 (h) is not absolute and is qualified by the content of sub-article 14 (d).

17) Sirius International Insurance Corp. v. FAI General Insurance Co. 사건(2002, WL 1446141(England), “2003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2003, p.273.

터 청구 받으면, FAI가 Sirius에 지급보험금을 상환해주기로 하였다. FAI는 Sirius를 수익자로 하는 UCP500이 적용되는 금액이 5백만 달러인 보증신용장을 Westpac Bank로부터 발행 받았다. FAI와 Sirius간의 2차적 담보약정(collateral agreement)이 있었으나 이것은 신용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2차적 담보약정에서는 개설의뢰인인 FAI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에만 수익자인 Sirius가 보증신용장에 따라 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더욱이 개설의뢰인이 지급청구에 동의하고, Agnew가 Sirius의 지급의무에 대한 판결 또는 중재결정을 받아야만 Sirius가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gnew는 재보험증권에 따라 Sirius에 재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그 지급청구의 타당성에 대하여 FAI는 자신이 Agnew의 지급청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Sirius는 재보험증권에 따른 Agnew의 지급청구 후 FAI를 대상으로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FAI에 임시 청산인(provisional liquidator)이 지정됨에 따라 중재가 중단되었다. Sirius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는 명백한 계약(express covenant)이 있더라도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Westpac Bank에 지급청구를 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에서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이 어떤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를 약화시킬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심 법원에서도 1심 법원의 판결이 지지되었다.

Sirius는 상원(the House of Lords)에 상소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상원은 은행이 부속서신(side letter)에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지는 못하였다. 대신에 부속서신의 조건은 상업적 해석에 따라 만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상원은 어느 정도 신용장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보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대한 판결 중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의 견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판결이다. 이 판결의 시사점에 대하여는 제4장 실무적 시사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2) 한국의환은행 사건¹⁸⁾

외환은행은 Petaco Petroleum Inc가 경유를 수입하기 위한 UCP500이 적용되는 각기 금액 8십만 달러의 2건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 신용장은 SWIFT로 통지되었고, 신용장금액에 ± 10%의 편차가 허용되었다. Field 47A (Additional Conditions)에 다음과 같이 수입 경유가격이

18) Korea Exchange Bank 대 Standard Chartered Bank사건, Suit No. 162 of 2004 (Registrar's Appeal No. 307 of 2004) (Singapore), "2006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2006, p. 376.

국제유가기준가격 지표에 연동된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Price: The price in US dollars per barrel based on the quantity as determined under clause 12 of the contract shall be on a ex tank price at Pyongtaek, Korea. Basis shall be equal to the average of the mean quotations published in the Platt’s Asia Pacific/Arabian Gulf Marketscan for gasoil reg 0.5 pct quotations under the heading Singapore plus a premium of US dollars 3.38 per US BBL.”

또한 Field 47A (Additional Conditions)의 E란에 다음과 같은 변동문구(fluctuation clause)가 포함되어 있었다.

“The amount of this letter of credit shall automatically fluctuate to cover any increase/decrease according to the price clause without further amendment to this credit.”

수익자는 각각의 신용장에 대하여 US\$939,789.01와 US\$1,021,641.66의 금액을 청구하는 서류를 확인은행인 Standard Chartered Bank에 제시하였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에 서류를 송부하면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개설은행인 외환은행은 US\$800,000 +/-10% 신용장금액 한도를 초과(amount overdrawn)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두 개의 원칙을 들었다.

첫째,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의 모든 것이 유효하여야 하며, 어느 부분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문구는 개별적으로 보아서 안 되며 전체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신용장금액의 +/-10%의 편차만 허용된다면 추가조건 E는 가격이 10% 이상 인상되면 무시되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추가조건 E가 8십만 달러를 기재한 Field 32B (Currency code, amount)와 Field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싱가포르 법원은 가격 변동을 외부적 자료에 근거하도록 한 것은 비서류적 조건이 아니고, 그리고 비록 그러한 외부적 자료를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UCP500 제13조 c항을 수정하는 명백한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3) Oliver 사건¹⁹⁾

19) Oliver 대 Dubai Bank Kenya Ltd. (2007) All ER (D) 135 (Sep) (England), 2008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2008, pp. 308 -311.과 Rogers Fayers, “Non-documentary Conditions and the Oliver case”,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14-4, 2008.

Oliver 부부는 그의 회사를 매각하기를 원하였고, 매입자는 주식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Oliver 부부를 수익자로 하는 UCP500이 적용되는 보증신용장을 Dubai Bank of Kenya Limited를 통하여 개설하였다. 이 신용장에서는 서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 이 신용장의 조건 3에서 Oliver 회사 주식 매입자에 대한 수익자의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개설은행(Dubai Bank of Kenya Limited)이 발행한 텔렉스가 요구되었다.

"authenticated swift msg and tested telex addressed to beneficiary's bank through advising bank issued by us i.e. Dubai Bank of Kenya Limited confirming the beneficiary's fulfillment of their commitments towards the Colonial Homes (Europe) Limited."

한편 Oliver는 회사의 계정, 기업 활동 및 종업원과 관련된 warranties를 매입자에게 발행하였다. Oliver와 매입자간에 약속 불이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신용장 유효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자가 개설은행에 텔렉스 발행을 지시하지 않아 Oliver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Oliver는 법원에 신용장의 조건 3은 UCP500 제13조에 해당되는 비서류적 조건이므로 은행이 이 조건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Oliver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조건 3에는 UCP500 제13조 c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조건은 무시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신용장의 조건 3은 개설의뢰인의 협조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조건이므로 피하여야 되나, 그것이 신용장에 포함되었다면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원칙이 개설은행의 행위를 요구하는 조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4) 신한은행 사건 120)

한국의 EH상사가 룡월 인터내셔널에 대한 기성복 수출과 관련하여 홍콩의 Hua Chiao Bank이 개설한 UCP500이 적용되는 신용장을 수취하였다. 신용장에는 개설의뢰인 측이 작성하고, 서명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 서명은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입은행인 신한은행은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서명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입한 후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였는데, 개설은행은 검사증명서 서명 상이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매입은행은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귀책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

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신용장에 그 필요서류로서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가 요구되고 있는 점이 명백한 이상 매입은행이 검사증명서 등을 매입함에 있어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되도록 그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검사증명서 위조에 관한 매입은행의 약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 조사의무가 면제된다는 이유만으로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매입은행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매입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ICC 은행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매입은행은 검사증명서의 서명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신용장은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억제할 것을 권장하였다.²¹⁾

(5) 신한은행 사건 222)

수익자는 마스터신용장에 따른 수출대금이 회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는 환어음이 제시되면 이를 인수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특수조건이 기재된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C)에 따라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하였다. 매입은행인 신한은행은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 매입하였다. 신한은행은 이 서류를 개설은행인 우리은행 다카지점에 송부하였고, 개설은행은 마스터신용장의 개설은행인 부산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금이 지급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인수 통지서를 신한은행에 송부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대응하는 해당 마스터신용장에 따른 수출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개설은행인 우리은행 다카지점은 신용장의 특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따른 환어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신한은행은 마스터신용장에 따른 수출절차가 실현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신용장의 조건에 합치하는 환어음이 제시되면 이를 인수하고 만기에 이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특수조건은 비서류적 조건이므로 무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신용장에 부가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에 그와 같은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에게도 그 특수조건이 효력은 미치므로,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이 이와

21) ICC Official Opinion R446

22)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신용장대금】

같은 특수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ICC 은행위원회에서도 백투백신용장의 대금지급조건이 수출상에게 매우 불리하여도 이 조건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²³⁾

백투백 신용장은 두 개의 별개의 독립된 신용장이 관련된다. 백투백 신용장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자신이 수익자인 신용장(첫 번째 신용장)을 수취하고, 다시 이 신용장을 근거로 거래은행에 제조업자가 상품을 인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업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두 번째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한다. 첫 번째 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을 개설 요청할 때에는 신용장에 해당 상품을 수입하여 재판매한 대금을 수령하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특별조건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⁴⁾ 따라서 두 번째 신용장의 수익자로서 이 신용장 조건은 대단히 불리한 것이다.

2)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1) Uzinterimpex 사건²⁵⁾

Uzinterimpex는 AMJ에 면화를 매도하였다. 대금의 90%는 선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장에 의해서 지급된다. 선지급금은 Standard Bank가 주선하고 발행한 신디케이트론으로 조달되었다. AMJ의 신청에 따라 선지급금액에 대하여 National Bank of Uzbekistan Bank(NBU)가 Standard Bank(SBL)를 수익자로 하는 청구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신용장에서 요구된 선적서류와 상업송장이 NBU 또는 AMJ에 의해서 화물인도의 증거로 SBL에 제시되었다. 그 후 AMJ에 인도된 면화 대금금액의 90%가 자동적으로 보증금액에서 차감되었다. 기초계약의 이행에서 AMJ는 요구되었을 때 선적지시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Uzinterimpex는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J는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 받아 그것을 재판매하였다. 이 때 재판매대금은 SBL의 계정에 송금되었다. 나중에 Uzinterimpex는 선적서류를 제시하였으나 하자로 대금지급이 거절되었다. 한편, SBL은 Uzinterimpex에 서류 반환을 거절하고, NBU에 선수금환급보증금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AMJ는 파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갔고, Uzinterimpex는 SB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Uzinterimpex는 SBL이 보증금액과 면화대금 양자를 모두 받은 경우 초과금액은 자사에 반환할 의무가 청구보증서의 묵시적 조건(implied term)이라고 주장하였다.

23) ICC Opinion R.179. Charles del Busto,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1995, pp.8-9.

24) Reinhard Längerich, "Security for third parties in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Documentary Credit Insight 12-1, 2006.

25) Uzinterimpex JSC v Standard Bank plc., "2009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2009, pp.517-521.

항소법원은 청구보증에 묵시적 조건이 포함되었느냐를 결정할 때 독립성의 원칙뿐만 아니라 국제상거래에서의 청구보증서 및 신용장의 역할에 크게 주목하여 Uzinterimpex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Steel J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의 이러한 종류의 확약에 의해서 국제상거래가 유지되고, 이 약정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는 문면상 나타난 조건에 따라 작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영국 법원은 국제상거래에서 당사자의 의사(the will of the parties)뿐만 아니라 신용장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법원은 대부분의 환경에서 그와 같은 묵시적 조건이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보증은 NBU와 SBL간의 독립적인 계약이기 때문이다.

(2) Credit Agricole Indosuez 사건²⁶⁾

수입상인 Ihsan Cotton Products (Pte) Ltd.는 면화를 수입하기 위하여 Forbes Reiss Ltd.를 수익자로 하는 UCP500이 적용되는 신용장을 Muslim Commercial Bank를 통하여 개설하였다. 이 신용장에서 어떤 서류는 “documents required are marked (X) below”라는 제목 아래에 표시되었고, weight and measurement lists는 “special conditions”라는 제목 아래에 표시되었다.

확인은행인 Credit Agricole Indosuez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매입하고, 개설은행인 Muslim Commercial Bank에 송부하였으나 개설은행은 weight and measurement lists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항소법원은 신용장거래의 서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 둘째, 신용장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수익자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요청할 때 제시하는 서류, 셋째, 신용장에서 언급하였으나 제시할 필요가 없는 서류가 있다. 법원은 weight and measurement lists는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서류이므로 은행은 이 서류의 제시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에 따르면 서류조건이더라도 신용장에서 제시서류로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은행은 이 서류는 제시서류가 아니고 단순히 언급한 서류임에 불과하므로 이 서류의 요구조건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신용장은 잘못 작성된 것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개설은행에 불리하게 해석하였다. 수익자나 확인은행은 서류를 제시하기 전에 개설은행에 조회하여 신용장 조건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이 통신수단이 발전한 상황에서는 애매한 신용장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정될 수

26) Credit Agricole Indosuez v. Muslim Commercial Bank Ltd. [2000] 1 Lloyd's Rep. 275 (C.A.) [England]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ICC Banking Commission의 technical adviser인 Gary Collyer는 신용장의 특별조건 란에 도 서류가 기재되었다면 서류 조건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본 판례와 다른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였다.²⁷⁾

IV. 실무적 시사점

기술한 ICC 은행위원회의 공식의견과 각국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신용장과 청구보증서의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되어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성의 원칙과 은행 위험의 제한

신용장과 청구보증서의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판례의 태도의 차이는 신용장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이 점에서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매입자와 매도자간의 위험의 균형을 달성하는 메카니즘이다. 신용장은 은행이 운송서류와 상업송장 등의 서류의 인도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입자가 상품을 먼저 인수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면 매입자에게는 위험이 없다. 그러나 매도자는 상품을 먼저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국제상거래에 은행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신용장에 독립성의 원칙이라는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독립성의 원칙은 신용장거래를 하는 매입자와 매도자간의 분쟁에서 은행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신용장은 일단 개설되면 기초계약과 독립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United City Merchants(Investments) Ltd. 대 Royal Bank of Canada사건²⁸⁾에서 Lord Diplock는 “확인취소불능 신용장 시스템에서 대금의 지급거절, 감액 또는 일시적 유예의 근거로서 매매계약의 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항변을 허용하지 않는다(the system of confirmed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s does not permit of any dispute with the buyer as to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of sale being used as a ground for non-payment or reduction or deferment of payment)”고 하였다.

27) www.collyerconsulting.com

28) (1983) 1 A.C. 168.

UCP600 제5조에서는 “은행은 서류를 거래하는 것이지, 서류와 관련된 상품, 서비스 또는 의무행을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립성의 원칙은 신용장의 초석이다. “왜냐하면 은행의 확약이 상인간의 분쟁에서 단절되지 않으면, 국제무역은 불가능하게 된다.”²⁹⁾

앞에서 논의된 것으로 볼 때 Sirius사건의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은 독립성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신용장거래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게 된다. 은행에 신용장과 관련된 부속서신에 기재된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은행을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매입은행이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이 지정한 지정은행이 아니라면 그가 신용장에 따라 매입하거나 매입을 약속하기 전에는 신용장거래의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매입은행이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기초계약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어렵거나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다.

비록 매입은행이 신용장에서의 매도인의 지급청구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계약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개설은행이 수락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개설의뢰인의 판단에 의존한다면 매입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신용장조건에 따라 매입한 매입은행이 신용장에 기재되지 않은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계약에 부과된 조건을 수익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따른 매입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의 대금지급의무는 기초계약조건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은행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되는지 여부에만 근거하여 일치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요구되어야 한다. 영국 법원의 전통적 자세는 신용장과 제시서류의 편차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은행의 의무는 실무상 많은 하자가 발견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심각한 편차에 대하여는 주의하여야 한다. *Banque de l'Indochine et de Suez SA v. JH Rayner(Mincing Lane) Ltd* 사건에서 Parker J.는 “약간의 차이는 허용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엄격 일치에서 벗어나면 은행에 위험이 발생한다. 은행에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고, 서류로서 요구되지도 않은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2. 사적 자치의 원칙

신용장거래에서 독립성의 원칙이 중요하기는 하나 상거래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29) *Czarnikow-Rionda v. Standard Bank* (1999) 1 All E.R. (Comm) 890.

능력은 계약의 세계에서는 본질적이다. 특정 당사자의 의사를 만족시키는 것이 신용장시스템을 붕괴시킨다면 그 대가는 너무 비싸다. 그러므로 신용장에서 독립성의 원칙을 유지하는 반면에 기초계약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원칙은 영국 법원에서 신용장의 통합성을 중요시하므로, 사기를 근거로 하여 은행의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인정선 결정을 받기란 지극히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개설의뢰인이 사기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수익자와의 매매계약과의 관계에서 손실 회복을 추구할 수 있다.

독립성을 갖는 메카니즘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는 그것이 수반하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그것을 서류형태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개설의뢰인은 그 조건이 신용장에서 만족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기초계약의 묵시적 조건을 신용장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아닌 서류조건으로 한다면 그들의 자유의사를 성취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해를 입지 않는다.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은 UCP의 애매한 규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ISP98이나 URDG758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지표나 개설은행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UCP600으로 개정될 때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으나 UCP600은 UCP500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그쳤다. 지금 신용장 독립성의 원칙을 방어하고 신용장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유지하는 부담은 국제상거래 관행을 추구하는 당사자와 법원에 부과되고 있다. 개설의뢰인이 수익자가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어떤 조건을 이행하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익자에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3.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일반적 유형

외관상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여 항상 UCP600 제14조 h항이 적용되어 비서류적 조건으로서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비서류적 조건 중 서류조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에는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 URDG758이나 ISP98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1) 지표(index)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기술한 외환은행 사건과 같이 상품 단가를 공표된 가격지수에 의하는 경우에는 UCP가 적

용되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었다. URDG758 제7조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청구보증서에 명시된 지표로서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기술한 Oliver사건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이 개설은행의 활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유효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기술한 신한은행 1사건에서는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조회하면 검사증명서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기술한 신한은행 사건 2에서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재수출대금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UCP600이 적용되는 보증신용장에 “This standby L/C will become operative only if US\$1million is remitted to the applicant’s account maintained with us(a/c no. 1234567)”과 같은 조건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이것을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여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조건은 보증신용장에서 수익자 지급청구권 발생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수익자와 지정은행이 이 조건을 UCP600 제14조 h항을 적용하여 이와 같은 명백한 조건을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³⁰⁾ 개설의뢰인은 보증신용장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위의 비서류적 조건을 서류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e(the issuing bank) undertake that once we receive the remittance of US\$1 million, we will, within one banking day, send an authenticated message to the advising bank confirming receipt of the sum and such authenticated message must be presented for the drawing of this standby L/C”

4.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UCP500과 UCP600 규정의 차이점

UCP500에서는 ICC Position No.3이 적용되어 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신용장에 관련 서류가 요구되었다면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UCP600에는 ICC Position No.3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에서 관련 서류가 요구되었다면 무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SWIFT로 통지 요청된 신용장에서 요구서류 난에 포장명세서를 요구하고, 추가조건 난에 포장방법에 대한 명시가 있는 경우 이것은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되어 무시된다. 즉 포장명세서에 포장방법이 표시될 필요가 없다. 단 포장명세서

30) King Tak Fung, “UCP 600 Legal Analysis and Case Studies”, P.E.E.R. Consultancy Ltd., 2008, p.74.

에 추가조건 난에 기재된 포장방법과 모순된 기재가 있으면 하자가 된다.

V. 결론

개설은행의 의무는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기초계약에 따른 분쟁과 관계없이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은행이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을 저해하여, 은행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UCP500에서부터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다만 ICC Position Paper No.3에 따라 신용장에 관련 서류가 요구되었다면 관련 서류에 비서류적 조건이 기재되어야 한다. UCP600도 UCP500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UCP600에는 ICC Position Paper No.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였더라도 무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용장거래에 UCP600이 적용된다고 하여 비서류적 조건이 무조건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비서류적 조건 중 서류조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은 국제표준은행관에서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각국의 판례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결정될 수 있거나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ISP98과 URDG758에서는 UCP600과는 달리 각국 판례와 같이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보다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대하여 통일규칙마다 규정이 약간 다르고, 판례에 따라서도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의 인정 범위가 달라 신용장 관련 은행과 신용장 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ISP98이나 URDG758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지표나 개설은행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선국, “신용장의 독립추상성과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경영법률」, 제11권, 한국경영법률학회, 2000.
- 강원진·김동윤,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검토”,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 남풍우·한상현, “신용장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과 합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3.
- 석광현,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무역상무연구」, 제2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 이대우, “신용장거래의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사례연구 및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 Affaki, Georges and Roy Goode, *Guide to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758*, ICC, 2011.
- Barski, Katherine A. “A Comparison of Article 5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d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Loyola Law Review*, Vol.41, Loyola University, 1996.
- Barnes, James, “Non-documentary Conditions and the LC Independence Principle”,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14-4, 2008.
- Barnes, James, “2003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2003.
- Busto, Charles del,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1995.
- Ellinger, Peter and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Hart Publishing, 2010.
- Fayers, Roger, “Non-documentary Conditions and the Oliver case”,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14-4, 2008.
- Fung,, King Tak, “UCP 600 Legal Analysis and Case Studies”, P.E.E.R. Consultancy Ltd., 2008.
- ICC, *Commentary on UCP600*, ICC, 2007.
- King, Richard, “Gutteridge & Megrah’s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 Europa Publication Ltd., 2001.

Soshuk, Janis Penton, "The Consequence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Brooklyn Law Review*, Vol.56 No1, 1990.

Zhang, Ninging,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in Documentary Credits", *2011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2011.

ABSTRACT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 for Letter of Credit and Demand Guarantee

Park, Sae Woon* Choi, Jang Woo**

Any attempt which requires banks to consider non-documentary conditions would destroy autonomy principle and increase the risks of the bank in L/C transactions. Therefore, non-documentary conditions are disregarded in the letter of credit. This provision was first introduced in UCP500, but later, ICC Position Paper No.3 added that if L/C requires documents related to non-documentary conditions, it cannot be disregarded. While the language in UCP600 is basically the same as that in UCP500,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that the former disregards the documents related to non-documentary conditions even if they are required by L/C.

However,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does not disregard all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It recognizes the validity of some non-documentary conditions which it is not feasible to change into documentary conditions. That is, such non-documentary conditions as can be determined from an index specified in the guarantee or identified from the issuing bank's own records or their normal operations are recognized as valid in legal cases. ISP98 and URDG758 do not consider these as non-documentary conditions.

The applicant should be cautious not to include non-documentary conditions in their applications.

Key Words : Non-documentary condition, UCP600, Letter of Credit, Demand Guarantee

* Profess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Hannam University